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3년 12월 22일자 '청약Home' 및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구분 | 기존 [2023.12.22.] - 입주자모집공고 6P | | 변경 [2024.01.02.] - 입주자모집공고 7P | |
|---------|-------------------------------|-------------|-------------------------------|-------------|
|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세대별 대지지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세대별 대지지분 |
| 대지지분 표기 | 034.2694B | 16.4460 | 034.2694B | 16.4450 |
| | 051.4442 | 24.6660 | 051.4442 | 24.5660 |
| | 059.2728A | 28.1000 | 059.2728A | 28.0967 |
| | 071.3606B | 33.6093 | 071.3606B | 33.5093 |

■ 개별 플러스 옵션 품목 중 현관 중문 표기 오류

| 구분 | 기존 [2023.12.22.] - 입주자모집공고 42P | 변경 [2024.01.02.] - 입주자모집공고 43P |
|------|--------------------------------|--------------------------------|
| | | 51타입 이상 |
| 현관중문 | SWING(여닫이형) 또는 3연동(자동) | 3연동(자동)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_19(COVID-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통보 예정입니다.
 ■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분양 상담 전화(☎02-6953-5532) 및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많은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부적격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 부적격 청약 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
|--|--|
| 1. [특별공급 청약시]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청약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로 부부가 동시 청약하여 부적격 판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청약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오니 전용면적 60㎡초과하는 주택형에 청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가점제 청약시]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산정은 청약자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 산정시 포함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양가족 산정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
| 3. [일반공급 청약시]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2) 현재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세대원도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22(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광명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2)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에 2년 이상(2021.12.22 이 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이거나 만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 |
|--------------|---|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 분양권 등 매수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 ○ | X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내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 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xi.co.kr/KM5>)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기간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1년 | 1년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10년의 범위 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을 위

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단,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원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합니다.(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4.01.03.(수) | 2024.01.04.(목) | 2024.01.05.(금) | 2024.01.11.(목) | 2024.01.13.(토) ~ 2024.01.20.(토) | 2024.01.22.(월) ~ 2024.01.24(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및 장애인 인터넷 청약자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1번지 - 문의 : ☎ 02-6953-5532 ※ 자격 서류접수, 계약체결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균형개발과 - 13522호(2023. 12. 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8-3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7층 18개동 총 2,878세대 중 일반분양 639세대
 [특별공급 292세대(일반[기관추천] 59세대, 다자녀가구 59세대, 신혼부부 108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5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 공급대상 | | | | | | | | | | | | | | | | | | | | (단위 : m ² , 세대) | |
|-------|------------|----|--------------|-------|-------------------------|---------|----------|-------------------|----------|----------|---------|----------|--------|-------|--------|-------|-----|----------|--------------|----------------------------|--|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
| 민영 주택 | 2023000688 | 01 | 034.0685A | 34A | 34.0685 | 12.1116 | 46.1801 | 27.7346 | 73.9147 | 16.0291 | 125 | 12 | - | 22 | - | 11 | 45 | 80 | - | | |
| | | 02 | 034.2694B | 34B | 34.2694 | 13.1091 | 47.3785 | 27.8981 | 75.2766 | 16.4450 | 23 | 2 | - | 4 | - | 2 | 8 | 15 | 1 | | |
| | | 03 | 039.2957A | 39A | 39.2957 | 13.6844 | 52.9801 | 31.9900 | 84.9701 | 18.3893 | 100 | 10 | - | 18 | - | 9 | 37 | 63 | 4 | | |
| | | 04 | 039.0530B | 39B | 39.0530 | 14.5917 | 53.6447 | 31.7924 | 85.4371 | 18.6200 | 22 | 2 | - | 3 | - | 1 | 6 | 16 | 1 | | |
| | | 05 | 051.4442 | 51 | 51.4442 | 19.3309 | 70.7751 | 41.8799 | 112.6550 | 24.5660 | 141 | 14 | 26 | 25 | 5 | 12 | 82 | 59 | 12 | | |
| | | 06 | 059.2728A | 59A | 59.2728 | 21.6743 | 80.9471 | 48.2530 | 129.2001 | 28.0967 | 86 | 8 | 16 | 15 | 3 | 7 | 49 | 37 | 29 | | |
| | | 07 | 059.3865B | 59B | 59.3865 | 22.1839 | 81.5704 | 48.3456 | 129.9160 | 28.3130 | 44 | 4 | 6 | 7 | 1 | 3 | 21 | 23 | 15 | | |
| | | 08 | 071.8387A | 71A | 71.8387 | 24.2421 | 96.0808 | 58.4828 | 154.5636 | 33.3496 | 26 | 2 | 3 | 4 | 1 | 2 | 12 | 14 | 9 | | |
| | | 09 | 071.3606B | 71B | 71.3606 | 25.1805 | 96.5411 | 58.0936 | 154.6347 | 33.5093 | 14 | 1 | 1 | 2 | 1 | 1 | 6 | 8 | 5 | | |
| | | 10 | 084.4118A | 84A | 84.4118 | 28.2995 | 112.7113 | 68.7184 | 181.4297 | 39.1220 | 38 | 3 | 4 | 6 | 1 | 3 | 17 | 21 | 13 | | |
| | | 11 | 084.6735B | 84B | 84.6735 | 29.4709 | 114.1444 | 68.9315 | 183.0759 | 39.6194 | 14 | 1 | 2 | 2 | 1 | 1 | 7 | 7 | 5 | | |
| | | 12 | 099.1128 | 99 | 99.1128 | 32.6047 | 131.7175 | 80.6863 | 212.4038 | 45.7190 | 6 | - | 1 | - | 1 | - | 2 | 4 | 4 | 2 | |
| 합 계 | | | | | | | | | | | 639 | 59 | 59 | 108 | 14 | 52 | 292 | 347 | 96 | | |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0.3025 또는 m²÷3.3058)
-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기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면적 합산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청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주차장, 전기/기계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사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주택형 약식표기

(단위 : m²)

| | | | | | | | | | | | | |
|--------------------|-----------|-----------|-----------|-----------|----------|-----------|-----------|-----------|-----------|-----------|-----------|----------|
| 입주자 모집공고(청약 시 주택형) | 034.0685A | 034.2694B | 039.2957A | 039.0530B | 051.4442 | 059.2728A | 059.3865B | 071.8387A | 071.3606B | 084.4118A | 084.6735B | 099.1128 |
| 약식표기 주택형 | 34A | 34B | 39A | 39B | 51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99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약식 표기 | 동(라인) |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 | | | |
| | | | | | | | | | | | | | | | | 계약시 | 2024.02.20 | 2024.06.18 |
| 34A | 103동 5,6,7,8호 104동 5,6,7,8호 105동 5,6,7,8호 | 125 | 13층~15층 | 33 | 192,525,000 | 232,475,000 | - | 425,000,000 | 10,000,000 | 3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127,500,000 |
| | | | 16층~20층 | 60 | 196,602,000 | 237,398,000 | - | 434,000,000 | 10,000,000 | 3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130,200,000 |
| | | | 21층~23층 | 32 | 200,679,000 | 242,321,000 | - | 443,000,000 | 10,000,000 | 3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132,900,000 |
| 34B | 106동 6호 | 23 | 2층~3층 | 2 | 187,995,000 | 227,005,000 | - | 415,000,000 | 10,000,000 | 3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124,500,000 |
| | | | 4층~5층 | 2 | 192,072,000 | 231,928,000 | - | 424,000,000 | 10,000,000 | 3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127,200,000 |
| | | | 6층~10층 | 5 | 196,149,000 | 236,851,000 | - | 433,000,000 | 10,000,000 | 3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129,900,000 |
| | | | 11층~15층 | 5 | 200,226,000 | 241,774,000 | - | 442,000,000 | 10,000,000 | 3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132,600,000 |
| | | | 16층~20층 | 5 | 204,303,000 | 246,697,000 | - | 451,000,000 | 10,000,000 | 3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135,300,000 |
| 39A | 106동 2,3,4,5호 | 100 | 2층~3층 | 8 | 213,363,000 | 257,637,000 | - | 471,000,000 | 10,000,000 | 37,100,000 | 47,100,000 | 47,100,000 | 47,100,000 | 47,100,000 | 47,100,000 | 47,100,000 | 47,100,000 | 141,300,000 |
| | | | 4층~5층 | 8 | 217,893,000 | 263,107,000 | - | 481,000,000 | 10,000,000 | 3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144,300,000 |
| | | | 6층~10층 | 20 | 222,423,000 | 268,577,000 | - | 491,000,000 | 10,000,000 | 3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147,300,000 |
| | | | 11층~15층 | 20 | 226,953,000 | 274,047,000 | - | 501,000,000 | 10,000,000 | 4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150,300,000 |
| | | | 16층~20층 | 20 | 231,483,000 | 279,517,000 | - | 511,000,000 | 10,000,000 | 4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153,300,000 |
| | | | 21층~25층 | 20 | 236,013,000 | 284,987,000 | - | 521,000,000 | 10,000,000 | 4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 39B | 106동 1호 | 22 | 2층~3층 | 2 | 217,893,000 | 263,107,000 | - | 481,000,000 | 10,000,000 | 3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144,300,000 |
| | | | 4층~5층 | 2 | 222,423,000 | 268,577,000 | - | 491,000,000 | 10,000,000 | 3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49,100,000 | 147,300,000 |
| | | | 6층~8층 | 3 | 226,953,000 | 274,047,000 | - | 501,000,000 | 10,000,000 | 4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150,300,000 |
| | | | 11층~15층 | 4 | 231,483,000 | 279,517,000 | - | 511,000,000 | 10,000,000 | 4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153,300,000 |
| | | | 16층~20층 | 5 | 236,013,000 | 284,987,000 | - | 521,000,000 | 10,000,000 | 4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156,300,000 |
| | | | 21층~25층 | 5 | 240,543,000 | 290,457,000 | - | 531,000,000 | 10,000,000 | 4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159,300,000 |
| | | | 26층 | 1 | 245,073,000 | 295,927,000 | - | 541,000,000 | 10,000,000 | 4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162,300,000 |
| 51 | 101동 5,6호 102동 5,6호 104동 1,2,3,4호 105동 1,2,3,4호 | 141 | 2층~3층 | 24 | 315,741,000 | 381,259,000 | - | 697,000,000 | 10,000,000 | 5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209,100,000 |
| | | | 4층~5층 | 24 | 322,536,000 | 389,464,000 | - | 712,000,000 | 10,000,000 | 6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213,600,000 |
| | | | 6층~10층 | 60 | 329,331,000 | 397,669,000 | - | 727,000,000 | 10,000,000 | 6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72,700,000 | 218,100,000 |
| | | | 11층~12층 | 16 | 336,126,000 | 405,874,000 | - | 742,000,000 | 10,000,000 | 6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222,600,000 |
| | | | 24층 | 2 | 349,716,000 | 422,284,000 | - | 772,000,000 | 10,000,000 | 6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231,600,000 |
| | | | 26층~28층 | 6 | 356,511,000 | 430,489,000 | - | 787,000,000 | 10,000,000 | 6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236,1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31층 이상 | 9 | 363,306,000 | 438,694,000 | - | 802,000,000 | 10,000,000 | 7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240,600,000 | |
| 59A | 102동 1,2,3,4호 103동 1,2,3,4호 107동 4,5,6호 108동 4,5호,109동 4,5호 110동 4,5호,111동 4,5호 112동 4,5호 114동 5호,115동 5호 116동 4,5,6호 117동 4,5,6호 | 86 | 2층~3층 | 57 | 354,699,000 | 428,301,000 | - | 783,000,000 | 10,000,000 | 6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234,900,000 | |
| | | | 17층 | 1 | 385,503,000 | 465,497,000 | - | 851,000,000 | 10,000,000 | 7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255,300,000 | |
| | | | 22층~23층 | 3 | 393,204,000 | 474,796,000 | - | 868,000,000 | 10,000,000 | 7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260,400,000 |
| | | | 27층~30층 | 7 | 400,905,000 | 484,095,000 | - | 885,000,000 | 10,000,000 | 7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265,500,000 |
| | | | 31층 이상 | 18 | 408,606,000 | 493,394,000 | - | 902,000,000 | 10,000,000 | 80,200,000 | 90,200,000 | 90,200,000 | 90,200,000 | 90,200,000 | 90,200,000 | 90,200,000 | 90,200,000 | 270,600,000 |
| 59B | 107동 3호 108동 3,6호,109동 3,6호 110동 3,6호,111동 3,6호 112동 3,6호 114동 6호, 115동 6호 116동 3호, 117동 3호 | 44 | 2층~3층 | 29 | 350,169,000 | 422,831,000 | - | 773,000,000 | 10,000,000 | 6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231,900,000 | |
| | | | 17층 | 1 | 380,973,000 | 460,027,000 | - | 841,000,000 | 10,000,000 | 7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252,300,000 | |
| | | | 23층 | 1 | 388,674,000 | 469,326,000 | - | 858,000,000 | 10,000,000 | 75,800,000 | 85,800,000 | 85,800,000 | 85,800,000 | 85,800,000 | 85,800,000 | 85,800,000 | 257,400,000 | |
| | | | 27층~30층 | 5 | 396,375,000 | 478,625,000 | - | 875,000,000 | 10,000,000 | 7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262,500,000 | |
| | | | 31층 이상 | 8 | 404,076,000 | 487,924,000 | - | 892,000,000 | 10,000,000 | 7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267,600,000 |
| 71A | 101동 1,2,3,4호 107동 2호, 111동 2호 114동 4호, 115동 4호 118동 4호 | 26 | 2층~3층 | 17 | 410,418,000 | 495,582,000 | - | 906,000,000 | 10,000,000 | 80,600,000 | 90,600,000 | 90,600,000 | 90,600,000 | 90,600,000 | 90,600,000 | 90,600,000 | 271,800,000 | |
| | | | 19층 | 2 | 444,846,000 | 537,154,000 | - | 982,000,000 | 10,000,000 | 88,200,000 | 98,200,000 | 98,200,000 | 98,200,000 | 98,200,000 | 98,200,000 | 98,200,000 | 294,600,000 | |
| | | | 23층 | 1 | 453,453,000 | 547,547,000 | - | 1,001,000,000 | 10,000,000 | 90,100,000 | 100,100,000 | 100,100,000 | 100,100,000 | 100,100,000 | 100,100,000 | 100,100,000 | 300,300,000 | |
| | | | 27층~30층 | 5 | 462,060,000 | 557,940,000 | - | 1,020,000,000 | 10,000,000 | 92,000,000 | 102,000,000 | 102,000,000 | 102,000,000 | 102,000,000 | 102,000,000 | 102,000,000 | 102,000,000 | 306,000,000 |
| | | | 31층 이상 | 1 | 470,667,000 | 568,333,000 | - | 1,039,000,000 | 10,000,000 | 93,900,000 | 103,900,000 | 103,900,000 | 103,900,000 | 103,900,000 | 103,900,000 | 103,900,000 | 103,900,000 | 311,700,000 |
| 71B | 107동 1호, 111동 1호 114동 3호, 115동 3호 118동 3호 | 14 | 2층~3층 | 8 | 403,623,000 | 487,377,000 | - | 891,000,000 | 10,000,000 | 7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267,300,000 | |
| | | | 4층 | 1 | 412,230,000 | 497,770,000 | - | 910,000,000 | 10,000,000 | 8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273,000,000 | |
| | | | 23층 | 1 | 446,658,000 | 539,342,000 | - | 986,000,000 | 10,000,000 | 88,600,000 | 98,600,000 | 98,600,000 | 98,600,000 | 98,600,000 | 98,600,000 | 98,600,000 | 295,800,000 | |
| | | | 27층~29층 | 3 | 455,265,000 | 549,735,000 | - | 1,005,000,000 | 10,000,000 | 90,500,000 | 100,500,000 | 100,500,000 | 100,500,000 | 100,500,000 | 100,500,000 | 100,500,000 | 100,500,000 | 301,500,000 |
| | | | 31층 이상 | 1 | 463,872,000 | 560,128,000 | - | 1,024,000,000 | 10,000,000 | 92,400,000 | 102,400,000 | 102,400,000 | 102,400,000 | 102,400,000 | 102,400,000 | 102,400,000 | 102,400,000 | 307,200,000 |
| 84A | 108동 2호,109동 2호 110동 2호,114동 2호 117동 2호 113동 1,2호, 115동 1,2호, 116동 1,2호 118동 1,2호 | 38 | 2층~3층 | 25 | 486,522,000 | 587,478,000 | - | 1,074,000,000 | 10,000,000 | 97,400,000 | 107,400,000 | 107,400,000 | 107,400,000 | 107,400,000 | 107,400,000 | 107,400,000 | 322,200,000 | |
| | | | 14층 | 2 | 517,779,000 | 625,221,000 | - | 1,143,000,000 | 10,000,000 | 104,300,000 | 114,300,000 | 114,300,000 | 114,300,000 | 114,300,000 | 114,300,000 | 114,300,000 | 342,900,000 | |
| | | | 19층 | 3 | 528,198,000 | 637,802,000 | - | 1,166,000,000 | 10,000,000 | 10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349,800,000 | |
| | | | 21층~25층 | 5 | 538,617,000 | 650,383,000 | - | 1,189,000,000 | 10,000,000 | 108,900,000 | 118,900,000 | 118,900,000 | 118,900,000 | 118,900,000 | 118,900,000 | 118,900,000 | 118,900,000 | 356,700,000 |
| | | | 31층 이상 | 3 | 559,455,000 | 675,545,000 | - | 1,235,000,000 | 10,000,000 | 113,500,000 | 123,500,000 | 123,500,000 | 123,500,000 | 123,500,000 | 123,500,000 | 123,500,000 | 123,500,000 | 370,500,000 |
| 84B | 108동 1호, 109동 1호 110동 1호, 114동 1호 117동 1호 | 14 | 2층~3층 | 9 | 482,445,000 | 582,555,000 | - | 1,065,000,000 | 10,000,000 | 96,500,000 | 106,500,000 | 106,500,000 | 106,500,000 | 106,500,000 | 106,500,000 | 106,500,000 | 319,500,000 | |
| | | | 16층 | 1 | 522,309,000 | 630,691,000 | - | 1,153,000,000 | 10,000,000 | 105,300,000 | 115,300,000 | 115,300,000 | 115,300,000 | 115,300,000 | 115,300,000 | 115,300,000 | 345,900,000 | |
| | | | 21층 | 1 | 532,275,000 | 642,725,000 | - | 1,175,000,000 | 10,000,000 | 107,500,000 | 117,500,000 | 117,500,000 | 117,500,000 | 117,500,000 | 117,500,000 | 117,500,000 | 352,500,000 | |
| | | | 31층 이상 | 3 | 552,207,000 | 666,793,000 | - | 1,219,000,000 | 10,000,000 | 111,900,000 | 121,900,000 | 121,900,000 | 121,900,000 | 121,900,000 | 121,900,000 | 121,900,000 | 121,900,000 | 365,700,000 |
| 99 | 112동 1,2호 | 6 | 2층~3층 | 4 | 645,072,000 | 708,116,364 | 70,811,636 | 1,424,000,000 | 10,000,000 | 132,400,000 | 142,400,000 | 142,400,000 | 142,400,000 | 142,400,000 | 142,400,000 | 142,400,000 | 427,200,000 | |
| | | | 24층 | 2 | 713,475,000 | 783,204,545 | 78,320,455 | 1,575,000,000 | 10,000,000 | 147,500,000 | 157,500,000 | 157,500,000 | 157,500,000 | 157,500,000 | 157,500,000 | 157,500,000 | 157,500,000 | 472,500,000 |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건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 '동별', '호수별' 차등 적용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웁션, 가전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 조건은 34A, 34B, 39A, 39B형의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며 51, 59A, 59B, 71A, 71B, 84A, 84B, 99타입의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계약금 10% 완납시 대출 실행가능)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 예정 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 예정 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 판명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3개사가 공동수급의 형식으로 시공하여 공동수급의 구성원의 개별사 브랜드 적용이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분 | | 34A | 34B | 39A | 39B | 51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99 | 합계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1 | 1 | - | 2 | 1 | - | - | - | - | - | - | 6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1 | 1 | - | 1 | 1 | - | 1 | - | - | - | - | 6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 | 1 | - | 1 | 1 | - | - | 1 | 1 | - | - | 6 | |
| | 중소기업 근로자 | 3 | - | 2 | 1 | 3 | - | - | 1 | - | 2 | 1 | - | 13 | |
| | 장애인 | 경기도 | 3 | - | 3 | - | 3 | 1 | 2 | - | - | - | - | - | 12 |
| | | 서울 | 1 | - | 1 | - | 3 | 2 | 1 | - | - | - | - | - | 8 |
| | | 인천광역시 | 1 | - | 1 | - | 1 | 1 | 1 | - | - | - | - | - | 5 |
| | 북한이탈주민 | 1 | - | - | 1 | - | 1 | - | - | - | - | - | - | 3 | |
| 계 | 12 | 2 | 10 | 2 | 14 | 8 | 4 | 2 | 1 | 3 | 1 | - | 59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 | - | - | - | - | 13 | 8 | 3 | 2 | 1 | 2 | 1 | 1 | 31 | |
| | 수도권(서울,인천) 거주자 | - | - | - | - | 13 | 8 | 3 | 1 | - | 2 | 1 | - | 28 | |
| | 계 | - | - | - | - | 26 | 16 | 6 | 3 | 1 | 4 | 2 | 1 | 59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2 | 4 | 18 | 3 | 25 | 15 | 7 | 4 | 2 | 6 | 2 | - | 108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 | - | 5 | 3 | 1 | 1 | 1 | 1 | 1 | 1 | 1 | 14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1 | 2 | 9 | 1 | 12 | 7 | 3 | 2 | 1 | 3 | 1 | - | 52 | | |
| 합 계 | 45 | 8 | 37 | 6 | 82 | 49 | 21 | 12 | 6 | 17 | 7 | 2 | 292 |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외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자격요건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 광역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동일단지(다른단지 포함)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 다 인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구분 | 관련 법률 | 해당기관 |
|---------------------------|---|---|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군인복지 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 **당첨자 선정방법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청약자 연령 ▶ 추첨]

- 광명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경쟁 발생 시 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우선),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경기도 거주 낙점자 발생시 기타 수도권 지역에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점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사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0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3.12.22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 배우자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509,453원~ 7,811,342원 | 7,622,057원~ 9,146,467원 | 8,040,493원~ 9,648,590원 | 8,701,640원~ 10,441,967원 | 9,362,787원~ 11,235,343원 | 10,023,934원~ 12,028,720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509,453원~ 9,113,233원 | 7,622,057원~ 10,670,878원 | 8,040,493원~ 11,256,689원 | 8,701,640원~ 12,182,295원 | 9,362,787원~ 13,107,900원 | 10,023,934원~ 14,033,506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811,343원~ 10,415,123원 | 9,146,468원~ 12,195,290원 | 9,648,591원~ 12,864,787원 | 10,441,968원~ 13,922,622원 | 11,235,344원~ 14,980,458원 | 12,028,721원~ 16,038,293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 | |
|--------------------|----------------|--|
| 우선공급 - 기준소득 | [5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공급 - 상위소득 | [2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추첨제 | [3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월)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 및 국토교통부 콜센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 |
|--|---|
| 근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근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 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노부모부양자 신청자격 불인정)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추첨]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23.12.22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구입, 상속, 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공급유형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2023년 적용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 | | | | | | | | |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130% 초과 ~ 160% 이하 | 8,462,289원 ~10,415,123원 | 9,908,674원 ~12,195,290원 | 10,452,641원 ~12,864,787원 | 11,312,132원 ~13,922,622원 | 12,171,623원 ~14,980,458원 | 13,031,114원 ~16,038,293원 |
| 추첨공급 (30%) | 1인 가구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 160% 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
| |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로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 및 국토교통부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1인 가구(단독세대 -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제로 청약 가능
- 1인 가구(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추첨제로 청약 가능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들

| |
|---|
| <p>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분 및 추천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 |
|--|--|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거주자가 우선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
|---|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 검증을 실시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 광명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 해당주택건설지역 - 광명시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 기타지역 - 광명시2년 미만 및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 | 1순위 | 전용 60㎡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 전용 60㎡초과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 전용 85㎡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 |

| | |
|----------------------|---|
| | <p>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
| | | 1명 | 10 | 5명 | 30 | |

| | | | | | |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분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 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1억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등 옵션에 대한 가격 제외)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 소형저가 주택에 관한 특례는 20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신청시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시에도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천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천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천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천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천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천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천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천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천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천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천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천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 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정보취약계층 해당)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
| | <p>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검수,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 내 청약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중복청약(당첨 시)처리 기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둘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세대분리 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 또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IV 청약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4.01.03.(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건본주택 방문 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만 가능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건본주택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1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 2024.01.04.(목) 09:00~17:30 | | |
| 일반공급 | 1순위 | 2024.01.04.(목) 09:00~17:30 | | |
| | 2순위 | 2024.01.05.(금) 09:00~17:30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외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 | |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 | | |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태로 청약순위별 접수하시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5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주택형과 약식표기형을 비교 및 확인 후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사업주체 및 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공고상(청약시)주택형 | 034.0685A | 034.2694B | 039.2957A | 039.0530B | 051.4442 | 059.2728A | 059.3865B | 071.8387A | 071.3606B | 084.4118A | 084.6735B | 099.1128 |
| 약식표기 | 34A | 34B | 39A | 39B | 51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99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 | |
|-----------|------------------------------------|--|--|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01.11.(목)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1.22(월)~2024.01.24(수) (10:00~17: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1) |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류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
|-----------------------------|--------------------------|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 |
|--------------|---|---|
| 이용기간 | 2024.01.11.(목) ~ 2024.01.20.(토) (10일간) |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4.01.1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구분 | 서류 제출 기간 | 서류 제출 장소 |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 2024.01.13.(토) ~ 2024.01.20.(토) (10:00~17:00) |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견본주택 (사전 방문예약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1)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하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로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 및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중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의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불가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 |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시 제외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분주택 비치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분주택 비치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분주택 비치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소득증빙서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분주택 비치 |
| | ○ | 비사업자확인각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분주택 비치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필요)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 |

| | | | |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 소유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co.kr)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발급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 |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생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자격요건 확인서 | |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소득증빙 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중임 태아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필요,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결과 제출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소유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co.kr) | | |
| 제3자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 | ○ | 위임장 | |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 |
|--------------|---|--------------------|------|---|
| 대리인 | ○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서명 또는 날인 |
| 신청 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 본인 | • 청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해당자적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 ②,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② 해당직장 |
| |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않는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①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또는 ② 사업자 등록증(사본) 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①, ③ 세무서 ②, ④ 해당직장 |

| | | | |
|---------------|--|---|-----------------------------|
| | | ④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③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행정복지센터 |
| 비정규직, 일용근로소득자 | |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③ ①, ② 번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2.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해당자격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자영업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6, 2017, 2019, 2021, 2022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서류구분 | 해당자격 |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산기준 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위택스(www.wetax.co.kr), 행정복지센터 |
| | | 추가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 인쇄-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인쇄-제출 | ①, ② 행정복지센터 / 일사편리(kras.go.kr) ③ 서울시 - 이택스(etax.go.kr) 서울 외 - 위택스(www.wetax.co.kr) |
| | 해당자 |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신청 및 열람하기 조회결과 인쇄-제출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관할자치단체 : 전체 / 과세연도 : 2023년 /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만 선택) ※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정부24 ② 위택스(www.wetax.co.kr), 행정복지센터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공통 서류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 ○ | | 인감도장 | | • 용도: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불가 |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 [전체포함]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 [전체포함]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상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 ○ | 복무확인서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전체포함]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 |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
| | ○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 가점제, 가점제 예비입주자 | ○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배우자 및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포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계약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Ⅶ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및 장소

| 구분 | 계약기간 | 장소 | 문의 전화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4.01.22.(월) ~ 2024.01.24.(수) (10:00 ~ 17:00) |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견본주택 (사전 방문예약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1) | ☎ 02-6953-5532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1차 계약금 | 수협은행 | 1010 - 2477 - 6223 |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현대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 |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좌 부여(가상계좌) | |

- 상기 계좌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 상이하며, 향후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 : 수협은행, 1010 - 2477 - 6223, 예금주 :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현대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부터는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대상 | 서류제출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 |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또는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금액 - ①1억 초과~10억원 이하 : 150,000원 / ②10억원 초과 : 350,000원 |

| | | | | |
|-----------------------|---|---------------------------|-----|---|
| | | | | ※ 발코니 확장계약 등 추가선택품목 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금액 - ①1천만원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②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4만원 ③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홈페이지 서식 참조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해당자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위임장 | 본인 | • 청약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물주택 비치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2)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수입인지 구매금액 - 공급대금, 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대금 포함)대금의 1/2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 분담

| | | | | |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청약 경쟁이 있는 주택형의 경우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재공고 후 인터넷 청약(또는 현장 접수 등)방법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그 외 주택형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제28조에 따라 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신청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에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에 대한 자체점검, 재검수 등을 통해 부적격사항 확인시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전까지)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이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 체결 조건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 주택형 중 34A, 34B, 39A, 39B형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며,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본 주택 건설지역인 광명시는 비투자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기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 확장,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방법

| 인지세 납부 안내 | |
|------------|--|
| 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
| 납부기한 | [분양계약]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
| 납부 및 구입 방법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

※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분양금액 및 발코니확장금액, 유상옵션금액의 기재금액액이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1억원 이상~10억 이하 : 15만원, 10억 초과 시 : 35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신 후 정부 수입인지를 등기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내용

- 시공관련 유의사항(시공사별 시공동명)

| 구분 | GS건설(주) | 현대건설(주) | SK에코플랜트(주) |
|----|-------------------------------|-------------------------------|-------------------------------|
| 동명 | 103,104,109,110,115,116동(6개동) | 101,102,111,112,113,114동(6개동) | 105,106,107,108,117,118동(6개동) |

• 본 아파트는 청약시 시공사를 구분하여 청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로 청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 주택형별로 동별 위치를 확인하여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9조에 준합니다.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플러스 옵션],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 주체에 따라 [발코니확장], [플러스 옵션], [가전옵션] 선택품목으로 구분되며 **납부계좌도 상이하오니 계약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시 1회차 납입기준) 이후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단위 :원, VAT포함)

| 구분 | 34A | 34B | 39A | 39B | 51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99 |
|-------------|-----------|-----------|-----------|-----------|------------|------------|------------|------------|------------|------------|------------|------------|
|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 2,900,000 | 5,900,000 | 2,900,000 | 5,900,000 | 13,500,000 | 16,500,000 | 16,900,000 | 17,400,000 | 17,200,000 | 17,900,000 | 17,500,000 | 18,30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시공사(지에스건설(주))간 기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라 발코니 확장은 지에스건설(주), 현대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가 공구별로 각각 시공하며, 발코니 창호는 사업주체가 정한 시공업체가 시공하므로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주체가 상이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제품 관련 사항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은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구성상 플러스옵션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형 선택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배선구 등 전기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입주자가 준공 이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확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세대 피해 등)
-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타 유의사항" (발코니)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납부계좌 | | | | 납부일정 | | | |
|--------|--------|---------|---------------------------|----------|-----------|-------------|----------|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계약금 (10%) | 중도금 (20%) | 잔금 (70%) |
| 발코니 확장 | KB국민은행 | 계약금 | 006001 - 04 - 342316 | 지에스건설(주) | 계약시 | 2024.06.18. | 입주지정기간 |
| | | 중도금, 잔금 | 계약 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 | |

- 상기 납부계좌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 상이하며 향후 발코니 확장 관리계좌(모계좌: KB국민은행 006001-04-342316, 예금주: 지에스건설(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
- 시공은 공구별로 각각 시공되나 발코니 확장대금의 수금은 지에스건설(주)의 계좌로 통함되어 관리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예정임)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약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 옵션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 플러스 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Style Up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설치내역 | • 유럽산 포셀린 타일 • 시트판넬 • 특화조명 • 단천장 및 리니어 조명 • 건축화 조명 • 천장시트판넬 • 신발장 하부조명 | | | | | | | | | | | |
| 구분 | 34A | 34B | 39A | 39B | 51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99 |
| 공급대금 | 5,900,000 | 6,200,000 | 6,500,000 | 6,700,000 | 6,700,000 | 7,600,000 | 7,600,000 | 8,200,000 | 8,300,000 | 10,000,000 | 10,500,000 | 11,900,000 |

※ 설치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KM5>)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주방 Style UP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설치내역 | • 세라믹패널 주방상판 • 특화 주방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자동 플랩상부장 •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독립형 후드(하츠) • 수입산 싱크수전 | | | | | | | | | | | |
| 구분 | 34A | 34B | 39A | 39B | 51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99 |
| 공급대금 | 8,100,000 | 7,800,000 | 8,300,000 | 8,700,000 | 8,600,000 | 8,600,000 | 8,300,000 | 9,900,000 | 10,500,000 | 12,300,000 | 11,800,000 | 12,300,000 |

※ 설치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KM5>)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59B, 71B, 84B형의 주방 Style Up 옵션 선택시 가스쿡탑 설치가 불가하므로, 주방가전선택 품목 중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가스쿡탑 인덕션3구 또는 하이브리드의 설치 또한 불가합니다.

욕실 Style UP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설치내역 | • 유럽산 포셀린 타일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 니켈 무광 액세서리 | | | | | | | | | | | |
| 구분 | 34A | 34B | 39A | 39B | 51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99 |
| 공급대금 | 3,200,000 | 3,200,000 | 3,600,000 | 3,600,000 | 3,200,000 | 5,800,000 | 5,800,000 | 5,800,000 | 6,000,000 | 6,100,000 | 6,100,000 | 6,100,000 |

※ 설치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KM5>)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개별 플러스 옵션 공급대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구분 | 34A | 34B | 39A | 39B | 51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99 |
| 침실 불박이장(침실2 또는 침실3) | - | - | - | - | 1,200,000 | 1,200,000 | 1,200,000 | -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 현관 중문 | SWING(여달이형) | 1,700,000 | 1,700,000 | 1,700,000 | 1,700,000 | - | - | - | - | - | - | - |
| | 3연동(자동) | - | - | - | -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바닥마감

| | | | | | | | | | | | | |
|----------------------|-----------|-----------|-----------|-----------|-----------|-----------|-----------|-----------|-----------|-----------|-----------|-----------|
| 구분 | 34A | 34B | 39A | 39B | 51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99 |
| 거실, 주방, 복도 유럽산 포셀린타일 | 1,300,000 | 1,500,000 | 1,600,000 | 1,800,000 | 1,700,000 | 1,800,000 | 1,800,000 | 2,200,000 | 1,900,000 | 2,400,000 | 2,400,000 | 3,000,000 |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이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설치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KM5>)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KM5>)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선택안 |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제조사 | 비고 |
|-----------------|-----|----|----------------------|-----------|------|----|
| 34A,34B,39A,39B | 선택1 | 2대 | 거실 + 침실1 | 3,300,000 | LG전자 | |
| 51 | 선택1 | 2대 | 거실 + 침실1 | 3,500,000 | | |
| | 선택2 | 3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4,700,000 | | |
| | 선택3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5,800,000 | | |
| | 선택1 | 2대 | 거실 + 침실1 | 3,500,000 | | |
| 59A, 59B | 선택2 | 3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4,700,000 | | |
| | 선택3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5,800,000 | | |
| | 선택1 | 2대 | 거실 + 침실1 | 3,600,000 | | |
| 71A, 71B | 선택2 | 3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4,800,000 | | |
| | 선택3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6,400,000 | | |
| | 선택1 | 2대 | 거실 + 침실1 | 3,600,000 | | |
| 84A, 84B | 선택2 | 3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4,800,000 | | |
| | 선택3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6,400,000 | | |
| | 선택1 | 3대 | 거실 + 침실1 + 주방 | 4,800,000 | | |

| | | | | | | |
|--|-----|----|----------------------------------|-----------|--|--|
| | 선택2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주방 | 6,400,000 | | |
| | 선택3 | 5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7,600,000 | | |
| | 선택4 | 6대 | 거실 + 침실1 + 침실 2 + 침실3 + 알파룸 + 주방 | 9,300,000 | | |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및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 배관 및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선택안 |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제조사 | 비고 |
|----------------------------------|-----|----|--------------------------------|-----------|-----------|----|
| 34A, 34B, 39A, 39B | 선택1 | 1대 | 거실 | 900,000 | 자이에스앤디(주) | |
| | 선택2 | 2대 | 거실 + 주방 | 1,800,000 | | |
| | 선택3 | 3대 | 거실 + 주방 +침실1 | 2,600,000 | | |
| 51 | 선택1 | 1대 | 거실 | 900,000 | | |
| | 선택2 | 2대 | 거실 + 주방 | 1,800,000 | | |
| | 선택3 | 3대 | 거실 + 주방 +침실1 | 2,600,000 | | |
| | 선택4 | 4대 | 거실 + 주방 +침실1 + 침실2 | 3,300,000 | | |
| | 선택5 | 5대 | 거실 + 주방 +침실1 + 침실2 + 침실3 | 4,100,000 | | |
| 59A, 59B 71A, 71B 84A, 84B | 선택1 | 1대 | 거실 | 900,000 | | |
| | 선택2 | 2대 | 거실 + 주방 | 1,800,000 | | |
| | 선택3 | 3대 | 거실 + 주방 +침실1 | 2,600,000 | | |
| | 선택4 | 4대 | 거실 + 주방 +침실1 + 침실2 | 3,300,000 | | |
| | 선택5 | 5대 | 거실 + 주방 +침실1 + 침실2 + 침실3 | 4,100,000 | | |
| 99 | 선택1 | 1대 | 거실 | 900,000 | | |
| | 선택2 | 2대 | 거실 + 주방 | 1,800,000 | | |
| | 선택3 | 3대 | 거실 + 주방 +침실1 | 2,600,000 | | |
| | 선택4 | 4대 | 거실 + 주방 +침실1 + 침실2 | 3,300,000 | | |
| | 선택5 | 5대 | 거실 + 주방 +침실1 + 침실2 + 침실3 | 4,100,000 | | |
| | 선택6 | 6대 | 거실 + 주방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 4,900,000 | | |

- 침실에 설치되는 시스클라인은 침실 개소당 시스클라인 미니가 설치예정입니다.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전 선택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 제조사 | 모델명 | 공급금액 | 비고 |
|-------------------------|------------|--------|-------------|---------------------------------------|-----------|------------------------|
| 전 주택형 | 빌트인 냉장고 | | LG전자 | S715SI24B | 6,100,000 | |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 | K221PR14B | 1,400,000 | |
| | 빌트인 콤비 냉장고 | | | M272PR35BL/R & 오픈장(34A,34B,39A,39B해당) | 900,000 | 34A,34B,39A,39B 오픈장 포함 |
| | 광파 오븐 | | | MZ385EBTAD /38L | 600,000 | |
| | 식기세척기 | | | DIE6PT(14인용, 열풍) | 1,500,000 | 51이상 주택형 해당 |
| | 쿡탑 | 인덕션 3구 | | BEI3GTBI | 1,200,000 | |
| 하이브리드(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 1구) | | 쿠쿠 | CIHR-D303FB | 400,000 | | |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 중 일부는 타입에 따라 선택이 불가합니다.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계좌 | | | | 납부일정 | | | |
|-------|--------|---------|---------------------------|----------|-----------|------------|----------|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계약금 (10%) | 중도금 (20%) | 잔금 (70%) |
| 플러스옵션 | KB국민은행 | 계약금 | 006001 - 04 - 342303 | 지에스건설(주) | 계약시 | 2024.06.18 | 입주지정기간 |
| | | 중도금, 잔금 | 계약 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 | |

- 상기 납부계좌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 상이하며, 향후 플러스옵션 관리계좌(모계좌: KB국민은행 006001-04-342303, 예금주: 지에스건설(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하며, 실제 입금 시 예금주는 세대별 동호수로 표시됨)
- 시공은 공구별로 각각 시공되나 플러스 옵션 대금의 수금은 지에스건설(주)의 계좌로 통합되어 관리합니다.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와 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혼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 예정임.)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당사는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월 : 2027년 7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 이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대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 실내골프, 작은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 부대시설 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집기는 카탈로그 및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홈페이지(<https://xi.co.kr/KM5>) 이미지에 구현된 것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지하주차장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호의 2

- 지하주차장 진입은 지하2층, 지하4층에서 가능하며 차량 통로 유효높이는 지하2,4층은 2.7M, 지하1,3층은 2.3M이므로 지하1,3층의 경우 일반 택배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 내용 |
|------|------|--|
| 공동사항 | 일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당시 |

| | | |
|---------|---------------|---|
| | | <p>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 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기사항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 | 인·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2023년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을 기준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17년 12월1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확대, 하자저감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면적은 준공시 확정됩니다. |
| | 사업지 및 도로단지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인근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측 연결녹지는 단지보다 약 7M이상 높아 인접세대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 바랍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인접 지역 개발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는 현충근린공원, 연서어린이공원, 광명동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GS건설(주), 현대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가 공동시공하는 사업장으로 동별로 구분하여 시공 및 입주 후 하자보수가 진행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건설(주)의 시공범위 : 103,104,109,110,115,116동(6개동) - 현대건설(주)의 시공범위 : 101,102,111,112,113,114동(6개동) - SK에코플랜트(주)의 시공범위 : 105,106,107,108,117,118동(6개동) |
| | 학교 및 국공립어린이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광명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표시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초등학교는 광명동초등학교, 중학교는 철산·하안중학군에 배정할 예정이며,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광명학군 배정방법 등 광명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관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부여건 | 동별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제연FAN, 우수조,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공조기, 주방배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세대는 차량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침해, 쓰레기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3,104동 전면 / 106동 측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13~118동 동측면 도로가 동 1층 대비 약 7M높이에 위치하여,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도로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1~3호 세대 전면에 약 8.5M데크가 있어 저층세대는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9,110동 사이에 커뮤니티시설(게스트하우스, 엘리베이터 홀)이 111,114동 전면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105,106동과 인접하여 경로당이 있어 조망,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105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냄새,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동은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며 동출입구의 평면계획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2동 후면에 지상주차장이 있으며 어린이집용 및 학원차량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형 및 복도형의 코어별 엘리베이터는 1대이며, 엘리베이터가 침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106동 2대)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 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 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원차량대기소(스쿨버스존)는 107동 1층에 별도로 설치되고, 남측 출입구 진입 차량은 111동 전면 티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7,113~118동의 세대 전후면에 옹벽이 설치되어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측 도로변 상가 상부 아파트 지상층에 상가용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어 인접 세대는 운전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 등에서 확인바랍니다. • 118동과 인접하여 종교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106동은 임대세대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및 공원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15,116동 옥탑에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운전 시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2동 4호라인 전면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공용 승강기 및 계단실이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4동 3~6호라인 세대 일부는 야간에 단지 남측 출입구 진입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세대내로 비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112,113동은 단지 남측 출입구와 인접되어 차량 진입 시 차량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p>단지계획 (설계,디자인,마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약취발생·사생활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도로, 단지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지 구간에 조경석 쌓기, 산석옹벽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침해·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제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체동은 필로티가 설치되어 입주민의 통로로 이용되어 저층세대는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가 크게 2개 레벨로 구성되며, 주 도로인 서측도로 대비 단지 높이는 약 10M가 높으므로 도로에서는 지하4층으로 진입이 되며, 지상층은 옥외 엘리베이터 및 계단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텃밭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아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계획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 외관계획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건물의 외관디자인(색채, 줄눈계획, 입면패턴, 마감재, 옥상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 전거 보관소,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등), 조경디자인, 비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 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 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현황 및 현장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 니다. • 아파트 옥상 조형물 및 로고(BI)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빗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용시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된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시 입주안내문과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세대 관 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사용 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준공 후 조경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스쿨버스 존 내 보호자대기소의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공용설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 | | |
|-------------|---------------|--|
| | <p>및 시스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 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휨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휨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승강장 1개소당 1대만 설치되어 이용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06동 2대) |
| | <p>주차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3,743대(지상11대, 지하 3,732대), 근린생활시설 41대로 계획(경차 및 장애인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폭 2.4m), 확장형(폭 2.5m), 장애인, 경형주차 주차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와 기계실, 휨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연결층은 101~107, 112동은 지하3,4층, 108~111동은 지하1~4층, 113동,114~117동 1~4호 라인 및 118동 1,2호 라인은 지하1,2층, 114~117동 5,6호 라인 및 118동 3,4호 라인은 지하1~4층입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38개소, 완속 151개소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진입은 지하2층, 지하4층에서 가능하며 차량 통로 유효높이는 지하2,4층은 2.7M, 지하1,3층은 2.3M이므로 지하1,3층의 경우 일반 택배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출입구와 통로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 <p>근린생활시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하4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 · 조망권 · 소음진동 ·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p>단위세대</p> | <p>평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개별 설치시 반드시 실측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현관창고, 비화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4,39형은 거실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 및 보일러 설치공간이 계획되어 소음이 거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 배치시 창문이 가려지고 개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4, 39의 욕실, 59B, 71A, 71B 부부욕실의 양면기, 세면기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34,39타입의 발코니 수전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하부에 설치되며, 스프레이건 및 호스 고장시 누수 우려가 있으니 미사용시 발코니 수전을 잠금주시기 바랍니다. • 34,39형 확장형이 아닌 기본형 선택시 발코니 수전은 동파 위험이 있어 미제공 됩니다. • 비내력 벽체는 ALC블럭벽체, 경량벽체,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되는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평형별, 층수별, 주동별, 라인별, 침실별로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일부 협소해지거나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비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복도,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다용도실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커튼박스 및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기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발코니 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시 보일러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모델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의 치수는 안목치수 기준이며 본 공사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및 욕실의 바닥레벨은 물넘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하여 위치별 마감두께가 다르고, 다용도실은 낮은 레벨 부분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 및 디자인(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 제외), 안방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후드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체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공회사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세대내부 벽체는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B, 71B, 84B형의 주방 Style Up옵션 선택시 가스쿠팅 설치가 불가하므로, 주방가전선택 품목 중 인덕션 3구 또는 하이브리드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가스쿠팅 인덕션3구 또는 하이브리드의 설치 또한 불가합니다. |
| 발코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에 드레인과 선흠통은 노출되어 시공되며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흠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축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흠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향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높이, 크기 등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 출입용 분합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 |
| 창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1개소(34A, 39A는 발코니창)에 유리난간이 적용되며, 그 외 침실은 철제 난간으로 시공되고 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유리난간이 적용된 외부창호를 통한 이삿짐 운반은 유리난간의 파손우려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 복도에 면한 창호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투명 유리가 적용됩니다. • 외부 창호는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창호(복도 창호 제외)이며 이중창 또는 단창으로 시공됩니다.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디자인, 개구부,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난간, 방충망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길이, 창호 분할, 창턱 높이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프레임 내부 포장재는 PVC재질이며, 해당 재질의 색상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프레임 포장재는 PVC재질이며 해당 재질의 색상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가구 및 마감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박이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프레임 등)나 액세서리(우산꽂이, 손잡이 등) 및 디테일은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체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뉠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개폐방식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는 가전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출몰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됩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선반은 본 공사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창호 하드웨어류(힌지, 도어스토퍼, 손잡이 등)는 본 공사시 디자인 개선 등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내 적용되는 마감표면재(벽지, 시트, LPM 등)는 제품 생산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체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체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재료적 특성상 인접 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줄눈 두께, 무늬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일 나누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등에 시공되는 바닥 타일의 경우 사선 방향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9㎡이하의 수동 여닫이 형태, 51㎡이상은 자동 슬라이딩 형태로 제공됩니다. • 현관 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공사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가구류, 냉장고장, 드레스룸 선반 등)은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무상 옵션 선택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하하며,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59㎡B, 71㎡B 타입의 마감 스타일업 선택시, 다용도실 미서기 창문 대신 여닫이 도어로 시공됩니다. • 34㎡A/B, 39㎡A/B 타입은 입주자의 자유로운 가전/가구 배치를 위하여 냉장고장이 미제공됩니다. • 입주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며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는 천장 내부의 환기덕트, 배관 등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GS건설(주), 현대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가 공동시공하는 사업장으로 동일한 마감재라도 각 사별 시공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전기 및 기계설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 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벽부형 및 스탠드형 에어컨을 위한 벽부형 냉매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하부에 각 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층에 루프 배관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전기 쿡탑 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시스클라인 옵션 선택시 시스클라인 장비 본체에 공기질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거실에 벽체 공기질 센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4A, 34B, 39A, 39B에는 보일러 하부 배관에 열선이 제공됩니다. • 34A, 39A는 욕실배기 및 주방배기는 공동 air duct에 연결되며, 34B, 39B의 주방배기는 공동 air duct에 연결됩니다. 이외 타입은 당해층 배기인 직배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51, 59A, 71A 타입 다용도실의 보일러 유지점검시 위시타워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보일러를 90도 돌려서 설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세탁기 수전 공간이 부족하여 입주자 설치품인 세탁호스가 보일러 전면으로 노출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비대상(사업승인일 기준 법정의무대상에서 제외)로 회신되었으나, 추후 이동통신설비 품질 문제 등으로 임의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정과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기타 설비장비 및 자재는 건설사별 다른 모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4A, 34B, 39A, 39B, 51, 59B, 71B 세탁호스 조작을 위해서 세탁기 또는 워시타워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99타입에는 욕실 청소용 수전이 제공됩니다. • 평형에 따라 욕실의 수건걸이는 상이합니다. • 전 평형 보일러 하부 급수, 급탕 노출배관에 열선이 제공됩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침실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 다용도실, 발코니 등 PD와 접한 벽체는 내부점검을 위한 내시경투입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시), 시스클라인(옵션 선택시)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에 따라 조명,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및 수량, 형태가 변경됩니다. • 통합형 온도조절기는 신규디자인 개발 제품으로 모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는 배기용 팬 및 급수급탕 분배기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에는 바닥난방(샤워부스 제외) 및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며, 바닥레벨은 물넘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설비 및 마감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p>건본주택</p> | <p>건본주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망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보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내 전시조명 및 팬던트, 전자제품류, 이동 가구류(식탁, 의자 등), 소품류 등은 모두 전시품입니다. • 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전자식 스위치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일반형 전자식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 조명이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건립 타입인 39m²A, 51m², 59m²B 타입은 라이트스타일로, 84m²A 타입은 미디움 스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마감재는 유상옵션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마감재 안내부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 적용되며, 사이버 건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가구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건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 건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건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건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p>기타 유의사항</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소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졌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졌으로 신고한 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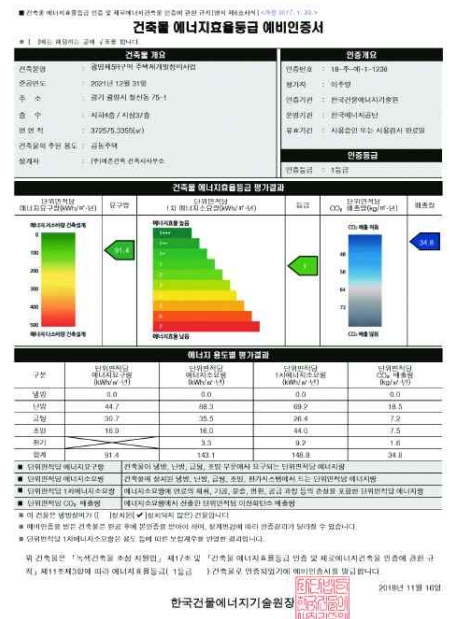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VII 최대지반가속도 : 0.169 g임.**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비 고 |
|----------------------------|--------------------------------------|------|--|
|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를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장수명 주택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 | | | | | | | | | | | | | | | |
|--|---|----------------------|-------|----|-----|-----|------|-----|-----|-------|--------|------|----|-------|------|----|-------|------------------|--------------|----------------------|---|
|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신청자 :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평가항목</p> <p>1) 구조안전 등급 2) 화재 안전등급 3) 환경친화적 등급 4) 에너지 효율 등급</p> <p>2018. 11. 23. 한국감정원장</p> | <p>장수명 주택 인증서</p> <p>1. 인증번호 : 2020-053 2. 신청자(사업주체) :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건축물명 : 광명5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4. 대지위치 :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내 광명 5R구역일대 5. 인증등급 : 일반(★)</p> <table border="1" data-bbox="907 470 1310 646"> <thead> <tr> <th>성능범주</th> <th>점수</th> <th>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내구성</td> <td>20점</td> <td>☆☆★★</td> </tr> <tr> <td>가변성</td> <td>12점</td> <td>☆☆☆☆★</td> </tr> <tr> <td rowspan="2">주거 용이성</td> <td>전용부분</td> <td>9점</td> <td>☆☆☆☆★</td> </tr> <tr> <td>공용부분</td> <td>9점</td> <td>☆☆☆☆★</td> </tr> <tr> <td>총합점수 (1 + 2 + 3)</td> <td>총 100점 중 50점</td> <td>□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td> </tr> </tbody> </table> <p>2020년 12월 08일 한국감정원장</p> | 성능범주 | 점수 | 등급 | 내구성 | 20점 | ☆☆★★ | 가변성 | 12점 | ☆☆☆☆★ | 주거 용이성 | 전용부분 | 9점 | ☆☆☆☆★ | 공용부분 | 9점 | ☆☆☆☆★ | 총합점수 (1 + 2 + 3) | 총 100점 중 50점 | □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1. 인증번호 : 2020-123 2. 신청자 :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건축물명 :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 대지위치 :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내 광명 5R구역일대</p> <p>2018년 11월 16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p> |
| 성능범주 | 점수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내구성 | 20점 | ☆☆★★ | | | | | | | | | | | | | | | | | | | |
| 가변성 | 12점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 용이성 | 전용부분 | 9점 | ☆☆☆☆★ | | | | | | | | | | | | | | | | | | |
| | 공용부분 | 9점 | ☆☆☆☆★ | | | | | | | | | | | | | | | | | | |
| 총합점수 (1 + 2 + 3) | 총 100점 중 50점 | □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 | | | | | | | | | | | | | | | | |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 구분 | 건축 | 정보통신, 소방 |
|------|---|--------------|
| 회사명 |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유원이앤에프주식회사 |
| 감리금액 | ₩7,825,671,000 | ₩870,0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12023 - 101 - 0004700호 | 307,374,2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

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합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 업 주 체 | 시 공 회 사 | | |
|--------|---------------------------------|----------------------------|---------------------------|-------------------------------|
| 상 호 |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에스건설(주) | 현대건설(주) | SK에코플랜트(주) |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26-1(광명동, 상우빌딩 5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4(계동, 현대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수송동, 수송빌딩) |
| 법인등록번호 | 134971 - 0002529 | 110111 - 0002694 | 110111 - 0007909 | 110111 - 0038805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 | | | | | | |
|-----------------------|---|---------------------------------|---------------------------------|----------------|--|---|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1번지 | | | | | |
| 현장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8-38번지 일원 | | | | | |
| 운영시간 | 오전 10:00 ~ 오후 18:00 | | | | | |
| 분양문의 | ☎ 02 - 6953 - 5532 | | | | | |
| 주요일정 |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기간 | 계약기간 |
| | 2024.01.03.(수) (09:00~17:30) | 2024.01.04.(목) (09:00~17:30) | 2024.01.05.(금) (09:00~17:30) | 2024.01.11.(목) | 2024.01.13.(토)~2024.01.20.(토) (10:00~17:00) | 2024.01.22.(월)~2024.01.24(수) (10:00~17:00) |
|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 https://xi.co.kr/KM5 | | | | | |

※ 본 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